

▶ COVER STORY: 한-중 관세청 'AEO MRA (상호인정협정)' 추진 합의..1

- ▶ FTA News: 원산지검증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2
-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특집 기획시리즈⑨ 수출입 세비③3

발간호 제 39 호 2011 년 11 월

Zoom-in I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4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5

► WHERE IS GRACE CHANG?:

► ABOUT WRITERS 7

관세청은 지난달 30 일 중국에서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제 14 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양국간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AEO MRA(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AEO MRA 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 1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신속한 통관을 담보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 한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MRA(상호인정협정)의 추진현황, MRA(상호인정협정)의 주요내용 및 MRA(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韓 - 中 관세청 'AEO MRA(상호인정협정)' 추진 합의

對 중국 수출입기업 물류 Speed Up 예상

I . MRA(상호인정협정)란?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상대국의 AEO 제도를 자국의 AEO 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 한다. 즉, AEO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의 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제도는 WCO SAFE Framework 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 Framework 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AEO 제도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출입 관련 업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AEO 공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AEO 제도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국 세관 간에 시행 중인 AEO 제도의 연계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韓 - 中 MRA 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인증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비율 축소 및 그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의 효과 등이 발생하여, 반대로 중국 AEO 인증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 또한 국내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수입물품의 인수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하여 국내 공급계획, 원자재 투입계획 등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П. 우리나라의 MRA(상호인정협정) 체결현황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EU·일본 등 세계 48 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일본·뉴질랜드 등 5 개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EU 등 주요국가 협정체결을 위한 연구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함께 가장 많은 AEO MRA 체결국이기도 합니다.

체결 국가	체결 시점	
미국·캐나다·싱가포르	2010 년 6 월	
일본	2011 년 5 월	
뉴질랜드	2011 년 6 월	



Ⅲ. MRA 체결국가와의 무역규모

만약, MRA 체결국가와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MRA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이 받는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며, MRA 체결로 인한 실익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MRA 체결(합의)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가 전체 무역규모의 전반에 가까운 4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MRA 체결로

국가별		수출액 (천달러)	수입액 (천달러)	수출비중 (%)	수입비중 (%)
총계		466,383,762	425,212,160	-	-
MRA 체결 (합의)국가	합계	215,094,702	189,648,780	46%	45%
	중국	116,837,833	71,573,603	25%	17%
	미국	49,816,058	40,402,691	10%	9%
	일본	28,176,281	64,296,117	6%	15%
	캐나다	4,101,864	4,350,930	1%	1%
	싱가포르	15,244,202	7,849,530	3%	2%
	뉴질랜드	918,464	1,175,909	0.1%	0.2%

출처 - 한국무역협회 e-Biz 지원본부 IT 전략실

인한 실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韓 - 中 관세청 'AEO MRA (상호인정협정)' 추진 합의는 우리나라의 제 1 교역국과의 합의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V. MRA(상호인정협정) 주요내용

양국간에 체결되는 상호인정협정은
①단계(제도연구) → ②단계(일대일 비교) →
③단계(제도평가) → ④단계(협정체결)의 단계를
거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은 "상호인정협정문"에 이를
명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협정문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양국의 AEO 인증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동등	상대국 AEO 업체를 자국의 AEO
대우	업체와 동등하게 대우
통관	수입통관절차에서 해당화물이 AEO
절차	기업에서 수출하는 화물인 경우 그
혜택	자격을 인정하여 통관절차 신속화
비상	자연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무역
사태시	흐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AEO
우대	기업에게 우선통관 등 혜택부여

V. MRA(상호인정협정) 효과

첫째, 수출입 비용 절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AEO 업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상대국 통관절차에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물품 인도의 신속성, 안전성 및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출입 통관 시 상대국 AEO 제도에 따른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거래업체 관리를 요구하는 AEO 제도를 각 국에서 도입함에 따라 최근에는 해외 거래 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AEO 공인을 받거나 AEO 공인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新 무역환경에서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셋째,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 외국 관세청의 해외 거래업체 방문심사에 의해

업체의 기술, 시설, 영업 정보 등 소중한 자원이 해외 세관당국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VI. MRA(상호인정협정) 제도의 활용

위에서 설명 드린 MRA 제도를 통한 각종 혜택 및 효과 등은 AEO 인증획득 업체임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0 여개 수출입업체가 이미 AEO 인증을 획득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다수의 업체가 인증을 획득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제 1 교역국인 중국과의 MRA 합의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체결 MRA(상호인정협정) 제도가 귀사의 물류비용 절감 및 신규 마케팅 수단 등으로 폭 넓게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글을 마치고자 하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차 문 현

(mhcha@customsservice.co.kr)

FTA News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① 세번변경기준

한 미 FTA 발효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8 개의 FTA 협정, 총 45 개 국가와의 FTA 가 발효되는 것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관세혜택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입업체는 FTA 관세혜택의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FTA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한-EU FTA 에 이어 한-미 FTA 발효도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검증대비를 위한 것 중 첫번째로 세번변경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011년 11월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EU를 포함 총 44개 국가이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유무역을 위한 경제시장은 더넓어지게 된다.특히 상품무역의 경우 수입자는무세 또는 점진적인 관세 절감 혜택을 볼 수있으며, 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의 구비로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기대할수 있다.

그러나 FTA 로 인한 혜택의 향연 이면에는 원산지검증(Verification of Proofs of Origin) 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EU 측은 제 3 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불법적으로 우회 수입될 것을 우려하여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강도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기업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하여 무엇을 사전에 구비하여야 할까? 특히 해당 수출품이 세번변경기준에 의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졌다면 하기의 Check List 에 주목하여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통사항 Check List 1)거래당사자 요건

- · 해당 제품 수출입자의 체약국 소재여부 및 원산지검증 수행 시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자인지 여부
- · 제품 생산자 및 재료 생산자가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관 의무자인지 여부

2)양허품목 및 세율심사

· 특혜세율 적용 받기 위한 물품의 품목분류 조작여부

운송요건

· 물품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 관세청 보도자료 참조

되었는지 여부

 \cdot 제 3 국을 경유한 경우 추가가공 및 세관통제 여부 확인

3)원산지증명 요건

-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기관발급 또는 자율 발급) 등 형식요건 준수 여부
- ·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국 세관에 수입 통관된 물품과 동일성 여부

2.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Check List

1)생산공정 및 생산시설 확인자료(사진, 공장 등록증 등)를 통한 각 협정별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 수행여부 확인

- ·제품의 실제 생산공장의 위치, 주소, 공장배치도, 생산라인, 생산인력현황, 출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해당 공정별 투입 원재료의 일치여부

2)해당 수출물품의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제품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와 제품의 세번(HS CODE) 변경여부

3)제품과 제품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

- · BOM 의 각 원재료별 HS CODE 를 확인하며, 업체의 품목분류 결정권자(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그 결정과정 및 근거서류에 대해 확인
- **4)**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정확성 여부
- · BOM, 공정단계별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카탈로그, 제품설명서, 공정도 등을 기초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소요량을 확인
- ·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소명서 관리현황 및 방법
-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상업송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원재료별 공급자·생산자 확인
- · 국내 구입
 원재료
 중에도
 수입한
 역외산
 자료

 또는
 원산지
 불명재료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며, 원재료별
 원산지의
 정확여부
 확인

 5)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중
 역내산
- 5)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중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에서
 가공한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한
 품목이
 있는
 경우,
 해당
 현황

 제시

6)세번변경기준 불충족시 협정별로 규정된 최소기준(미소기준) 해당 여부

원산지 인증 주요 위반유형

유형	위반내용		
비원산지 재료 누락	물품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부 품 중 원산지기준 불충족 재료· 부품을 고의적으로 누락		
원재료별 품목분류 위반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실제 와 다른 품목번호 적용		

※ 관세청 보도자료 참조

3. 세번변경기준 충족현황 및 자재명세서 (BOM) 등 입증서류 제출

합정별로 규정된 원산지검증방식의 세분화(직접검증, 간접검증, 혼합검증 등)와 무작위방식(Random Check)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검증요청에 대하여 예기치 않은 기업의 부담과 FTA 이행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EU 이외에 EFTA, ASEAN, 인도 등의 FTA 에서도 원산지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⑨

수출입 세비(稅費)③

지난 호의 수출입세비에서 살펴본 세금(증치세, 소비세)에 이어 이번 호 에서는 선박톤세, 세금 체납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선박톤세(船舶吨税)

1. 선박톤세의 의미

선박톤세는 해관이 설치된 개항에서 해관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정박하는 국제항행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사용세이다. 선박톤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항도에 사용되는 시설의 건설이다.

2. 선박톤세의 징수근거

《선박톤세잠행방법(船舶吨税暂行办法)》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행선박은 중국항구를 운행할 때, 항구와 조항설비를 사용함에 따른 일정 세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톤세를 징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차선세(车船稅)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박톤세는 특혜세율과 일반세율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화인민공화국과 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지구)에 대해서는 선박톤세 특혜세율을 적용하며, 호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에 적을 두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톤세의 징수범위

현행《선박톤세잠행방법》 규정에 따라, 선박톤세를 징수해야 할 선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 1) 중국의 항구에서 운행하는 외국적 선박
- 2) 외상이 임대(나용은 제외)한 중국적 선박
- 3) 중외합영해운회사가 보유 또는 임대한 중, 외국적 선박



4) 중국이 임대한 외국적 국제항행선박 규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편입된 이후로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단독관세구가 되었다.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 해관이 이미 선박톤세를 징수한 외국적 선박이라 할지라도 본토 항구에 들어왔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선박톤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선박톤세의 계산공식

가. 최대적재량의 계산

현재, 국제적으로 최대적재량(吨位)을 측량하는 것은 선박의 구조에 따라 폐쇄식(封闭式) 또는 개방식(开放式)으로 나뉘어 계산하고 있다. 총톤수(大吨位)와 순톤수(小吨位)로 나눈다면,

 폐쇄식이 총톤수가 되고 개방식이 순톤수가 된다.

 화물을 많이 적재하였을 때에는 총톤수가

 사용되며, 화물을 적게 적재하였을 때에는 순톤수가
 사용된다. 중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총톤수와 순톤수 양종의 최대적재량 증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선박인 경우에는, 실제

 적재상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총톤수에 따라

 선박톤세를 징수한다. 선박톤세는 순톤수(净吨位)를 가지고 징수한다. 순톤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순톤수 = 선박의 유효용적 × 톤 / 입방미터 선박의 순톤수의 끝자리 수는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반톤 이하의 경우에는 끝자리 수에 대해서는 부과를 면제한다. 그러나 반톤 이상일 경우에는 1 톤으로 계산한다. 1 톤이 안 되는 소형선박일 경우에는 해관총서의 특별징수면제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1 톤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나. 선박톤세의 징수와 환급/보정

선박톤세의 징수 기산일은 "선박이 직접 접안한 날"로 한다. 즉 입항선박은 입항신고를 한 날로부터 징수한다. 예를 들어 입국 후 묘지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선박이 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입국 후 바로 접안하여 정박하였을 경우에는 정박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선박이 입항한 날에 선박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서 선박 정박체류 시점에 유효한 "선박톤세 인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가증을 수령하고 만기가 된 이후까지 중국을 떠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기일 다음날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인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자는 규정에 따라 해관에 신고하여 선박톤세를 납부하고 인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선박톤세의 징수방법으로는 90 일 납부기한과 30 일 납부기한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납부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청 시 선택한다. 선박톤세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대상 선박톤세 세액 = 등록된 순톤수 \times 선박톤세 세율 (원/순톤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될 경우, 해관은 선박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공하는 유효한 증명서에 근거하여 1 년 내에 선박톤세의 환급 또는 보정신청을 할 수 있다.

- 1) 선박 책임자가 규정을 잘 몰라 선박톤세를 중복 납부한 경우
- 2) 기타 원인으로 잘못 징수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세금 체납금(稅款滯納金)

1. 징수범위

체납금 징수는 세수관리 중에 일종의 행정 강제조치라 할 수 있다. 해관의 감독관리 중에 있어서 체납금은 납세대상 기업 또는 개인이 해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법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이다. 규정에 의하면, 관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수입단계 소비세, 선박톤세 등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 해관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 일수에 따라 체납세금의 0.5‰വ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한다. 체납금을 징수하는 주된 목적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가중된 경제재재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최대한 빨리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촉진함에 있다.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징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화물이 면허된 후에, 해관이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부족징수 또는 세액탈루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 또는 화물면허일로부터 3 년 내에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납부 또는 화물면허일로부터 시작하여 해관에서 이를 발견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부족징수금액 또는 탈루세액의 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한다.

2)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야기된 해관감관화물에 대한 부족징수 또는 세액탈루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관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시작하여 해관에서 이를 발견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부족징수금액 또는 탈루세액의 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날"이란,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이 행위가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이 행위를 발견한 날로 한다.

3) 임대 수입화물의 임대료를 나누어 지불하는 겨우, 납세의무자는 매번 임대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해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체한 경우 해관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외에 납세신고 기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한다. 임대 수입화물의 임대일이 끝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관에 해관수속 종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처리수속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해관에서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결정하는 관련 규정과 임대기간 만료 후 제 30 일 되는 날 이 화물에 적용할 환율, 세율에 따라 그 과세가격과 납부세액을 심사 확정하는 것 이외에 임대기간 만료 후 30 일부터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한다.

4) 일시 수출입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또는 재수입되지 않고, 재수춬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해관에 수출입 및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금 이외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해관의 체납일자에 대한 계산은 세금을 날로부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세비를 납부한 날까지로 하며, 그 중에 법정 공휴일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납부기한이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일 때에는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 지난 첫 번째 근무일까지로 순연된다. 국무원이 휴일과 근무일을 임시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의 상황에 따라 납부기한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의 최종일이 9 월 30 일이고 일요일이었는데 국무원에서 9월 29 일과 30 일을 10 월 4 일과 10 월 5 일로 서로 맞바꿨을 경우에는 9 월 29 일과 30 일은 근무일이 되어, 만약 납세의무자가 9 월 30 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 월 1 일부터 시작된다. 체납금은 해관에서 체납금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징수함과 동시에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 만약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15 일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세금을 납부한 날까지 체납세금의 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별도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징수표준

체납금은 매 화물의 관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에 따라 단독으로 계산하며, 최저 징수금액은 인민폐 50 원으로 하고, 50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과징수를 면제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관세체납금 금액 = 체납관세액 × 0.5‰ × 체납일수

수입단계 해관대정세 체납금 금액 = 체납 수입단계 해관대정세 세약 × 0.5‰ × 체납일수

<다음 호에 계속>

관세청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내용 o 개정이유

용도외사용 위험도가 낮은 감면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기간단축·절차개선을 통해 업체의 사후관리 비용절감 및 세관의 사후관리 업무효율성 제고

o 개정내용

- ① 특정용도를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장비 등 용도외사용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제 1-3 조, 별표 1)
 - ·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 세척기, 광학 측정기 등 23 개 품목(HS 10 단위 기준)
 - · 나프타·프로판·부탄 제조용 원유
- ② 부분품·원재료 등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단축 (제 2-1 조, 별표 2)
 - · (현행) 원칙적 6 월 → (개선) 원칙적 3 월로 단축
- ③ 반도체제조장비 제조·수리공장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개선
 - · 제조·수리공장에서 수입하는 세율불균형 감면세 물품의 반입 및 설치장소변경 신고의무 생략(제 1-3 조)
 - · 세율불균형감면세 물품은 당해물품의 소재지 에 관계없이 제조·수리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일괄 사후관리 (제 1-4 조)
 - · 성질·성상 등을 고려하여 용도외사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별로 사후관리 종결신청 허용(제 8-1 조)
- ④ 기타 관세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리 등 $(제 \ 1-3 \ \Sigma, \ \exists \ \Xi \ 2)$
 - ·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을 사후관리대상에서 삭제
 - · '12 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에서 수입하는 감면물품을 사후관리대상에 추가

· 고시에 표현된 과태료 처분의 근거 조항을 현행 관세법 조문에 맞게 정정

o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o 개정이유

① 부산시내 부두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ODCY)의 특허 갱신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함 으로써 기업운영 및 원활한 수출입화물 처리 지원 필요

o 개정내용

ODCY 업체별 개별특허 심사(부칙)

: 2011.12.31 특허가 만료되는 부산시내 ODCY 의 특허기간은 특허갱신 시 업체별로 세관장이 정하도록 규정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1 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o 개정이유

- 전자통관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 · 첨부서류 전자적 제출 시행 반영
- ·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 통관제한 반영

o 개정내용

- ① 전자통관심사제도 도입 (제 8 절 전자통관심사 추가)
 - ·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기준 및 대상물품 기준 마련 (제 2-8-1 조)
 - · 전자통관심사 지정신청 및 관리절차 신설 (제 2-8-2 조)
 - · 전자통관심사 신고 및 수리시기 명시 (제 2-8-3 조)
- ② 첨부서류 전자적 제출 시행
 - \cdot 주요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제출 허용 (제 2-1-5 조제 1 항)
 - ·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전부 전자 이미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로 간주 (제 2-1-8조제 11 항)



- ·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신고인은 서류보관 의무 배제 (제 2-4-7조)
- ·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고려 시행시기는 추후 정함(부칙 제 3 조)

③ 기타 사항

- \cdot 용어정의(전자통관심사, 전자이미지 전송) 추가 (제 1-0-3 조)
- · B/L 합병신고 근거규정 명시 (제 2-1-10 조제 1 항)
- ·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의 통관보류 신설 (제 2-2-9 조제 4 호)
- · 검사방법에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추가 (제 2-3-5 조)
- · 적하목록 사전제출 시행에 따른 출항전 신고, 입항전신고물품의 신고수리시기 명확화

(제 2-4-1 조)

· 신고수리시 담보제공 규정 관세법 개정내용 반영 (제 2-4-2 조제 1 항)

o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1 년 11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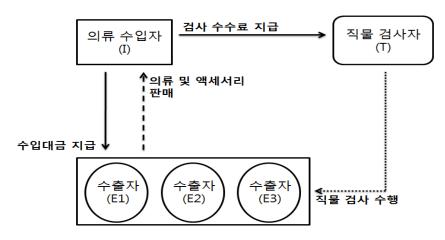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언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싣는다.

직물 검사 수수료의 실제지급가격 해당 여부

(HQ W563480, 2006,06,09)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거래사실(Facts)

- 1. I는 다양한 국가의 다수 수출자 (E1, E2, E3)로부터 의류와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소매상임
- 2. I 는 수입물품의 생산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 이전 단계에서 직물 검사를 함
- 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제 3 자인 T 는 E 가 직물을 구입하기 이전에 직물 검사함
- 나. I 는 검사를 거친 직물을 E 가 구매하거나 생산에 사용하였는지 와 무관하게 검사 비용을 T에게 지급함 3. 수입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매대리계약 관계에 있는 구매대리인이 직물 공급 및 검사 관리를 맡고 있음
- 4. I 는 검사 시점에 직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E 에게 직물을 생산 지원하지 않음

□ 쟁점(Issue)

I 가 T 에게 지급하는 검사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 해당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19 U.S.C) \$1401a 규정의 거래가격방법이다. 동 규정은 거래가격에 대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생산지원을 포함한 법정 가산금액을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1) 또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b)(4)

2. 관련 예규

가. Ruling HQ542178

생산자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 비용이 상업송장에서 물품금액과 별개로 구분되어 표시되었다라도 검사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함나. Ruling HQ545753

- 1) 최종구매자는 용접 및 환승시스템에 결합 될 로봇을 시스템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생산자는 로봇이 시스템에 결합되기 전에 검사를 실행함
- 2) 인용된 Generra Sportswear Company 대미합중국 사건(1990)판례에서, 연방순회법원 (CAFC)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성질상 물품 대금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지급은 거래가격을 구성한다고 결정
- 미국 관세청(CBP)은 구매자가 검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Generra Sportswear Company 대 미합중국 사건 (1990)판례 인용
- 다. Ruling HQ542946/542774
- 1) 검사 비용의 과세 여부에 관한 논쟁은 완제품에 대한 검사가 미국으로 선적되기 이전에 행해졌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
- 2) CBP는 검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독립된 제 3 자인 경우 검사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라. Ruling HQ547033

- 1) 의류 구매자는 해외에서 독립된 제 3 자를 직물 컨설턴트로 고용함
- 2) 컨설턴트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며, 구매자는 직물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직접 지급함
- 3) 구매자가 독립된 제 3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진정한 의미의 구매수수료이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지 않음
- 4) 다만 정밀검사, 컨설팅 관련한 서비스 비용이 구매수수료인지 여부에 관해 논쟁 이 있으며, 디자인 및 연구 개발과 관련한 품질관리는 생산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해당 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됨
- 보 예규에서 컨설팅 수수료는 생산지원비용과 실제지급금액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으로 결정
 7 정점 검토

쟁점 사안과 앞선 Ruling을 비교한 결과 검사 비용은 수입의류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 -I가 독립된 제 3 자인 T에게 지급한 검사 수수료는 E에게 또는 E의 이익의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 -검사수수료는 수입물품의 디자인 및 연구 개발과 관련이 없어 생산지원비용으로도 볼 수 없음

☐ 결정(Holding)

검사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볼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underline{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장승희 대표 관세사

2002 년, 한일 월드컵! 16 강 진출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던 우리 국민들은 '꿈은★이루어진다'라는 표어를 모두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의 기간 동안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최선을 다한 결과는 대한민국 축구팀이 4 강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은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크게...돌이켜 보면 언젠가부터 세상이 많이 강퍅해지고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경제위기로 미국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뢰지수가급락한 기업들,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정치인들,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고 방치한 고등학생등등. 아름다운 꿈을 생각할 여유는 호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실의 어려움을,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하여는 두 발은 이 땅에 굳건히 버티고 서있으면서도 머리는 들고 저 높은 곳을 바라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가 드디어 국회의 비준을 받았고 2012 년 1월 1일에 발효 될 예정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FTA 특혜를 받을 산업 및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혜세율을 적용 받는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그만큼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한소식지 Zoom In Trade의 9월호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한설명을 드렸습니다.

Cover Story 는 AEO 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2012 년 관세청의 AEO 제도는 다각화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MRA 대상국가가 증가되면서 AEO 인증 기업의 혜택 또한 급격하게 증가될 것입니다. 아직 AEO를 받지 못하신 고객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부산국제우편세관의 임창환세관장께서 **중국특집시리**즈로 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호에는 중국세관에서 부과하는 수출입세비중 선박톤세, 세급체납금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관세무역관련 법령변경소식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입시 세금을 감면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가 기간단축 등 완화되었습니다.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로 알아보는 관세평가에서는 직물검사수수료의 실제지급가격 해당여부 케이스를 살펴 보았습니다.

FTA, AEO, 감면세, 사후관리, 증치세 등등 알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할 일들이 현실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들을 잘 살펴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완벽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없이 꿈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꿈을 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으로 도피하는 중에도 꿈을 꾸었던 야곱처럼 Jacob's Ladder 가 필요합니다.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12 년으로 향하는 이 겨울, 멀리 높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꿈이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주기를 기원 드립니다.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오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r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u>shinhan@customsservice.co.kr</u>) 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으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한-중 관세청AEO MRA



차 문 현 관세사 (mhcha@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 대덕전자, 부광약품, 지오디스코리아 등 다수업체 AEO 컨설팅



FTA News-원산지검증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최 지 아 관세사 (jh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Voices From The Fields-중국기획연재시리즈⑨ 수출입 세비③

신한관세법인 장 승 희 .



임 창 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이 선 경 관세사 (j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US Rulings 연재⑩ 직물 검사 수수료의 실제지급 가격 해당 여부



신 성 훈 관세사 (<u>shshin@customsservice.co.kr</u>)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통권 39 호 | 발행일 2011 년 11 월 15 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김연서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4 Tel 02-542-1181 Fax 02-544-9705 간별 월간